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458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유재민, 이예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가.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9. 5. 30.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2,213,1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13,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계약일자란 일자에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 2,400만 원을 대출받기 2020. 4. 12. 약정이율 14.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17. 현재 대출원리금은 약 27,610,779원(대출원금잔액 23,751,000원 + 대출이자 3,859,779원)이다.

다. C은 2019. 5. 30.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9. 5. 30.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계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해약환급금에서 계약자 변경일 당시의 보험계약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돈)은 2,213,125원이다.

마.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자산가치 있는 해약환급금 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 이전 시점, C와 피고의 신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C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C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앞서 본 순지급가능액 2,213,1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13,1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연미

별지

목록

순번	상리번호	원래 보험계약자	계약일	계약자변경일	총지급금	상환액
1			2010. 2. 10.	2019. 5. 30.	2,213,115원	